

# 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-9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우리구 마곡도시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'폐기물발생량의 월 최대 변동계수' 및 '폐기물처리시설 가동율'의 근거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적정 부과하고자 함(안 제4조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  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용량”을 “용량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.3미만, 소각시설 가동율은 82.19%를 적용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용량”을 “용량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.3미만,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율은 84.93%를 적용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“택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”을 “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조성원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 
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  
량 <후단 신설>

2. (생략)

3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 
제공미터당 매입단가 산정

가. (생략)

나.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  
은 경우에는 택지의 표준  
지 공시지가의 평균가

4.·5. (생략)

③ (생략)

----- 용량을 말한  
다. 이 경우 계획 월 최대  
변동계수는 1.3미만, 음식  
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 
율은 84.93%를 적용한다.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 
-----  
-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  
성원가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